

[별표 4]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제31조 관련)

구 분	범 위
1.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p>「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에 따라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이 표에서 “항로등”이라 한다)의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사, 평가, 검증 등을 실시하여 필요성을 인정한 항로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li> <li>2)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의 통항(통항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항로 등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li> </ol>
2. 수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p>가.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직접적으로 통항하지 않는 수역에 교량·터널·전선·해저케이블 등 시설물을 건설·부설하거나 설치된 시설물을 보수하려는 경우</p> <p>나. 선박(관리선박을 포함한다)이 통항하는 가항수역에 별도 시설물의 설치 없이 해당 가항수역을 횡단하는 전선·해저케이블 등을 설치·부설하거나 보수하려는 경우</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나 작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 작업을 말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li> <li>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li> </ol> <p>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선박이 통항할 수 없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또는 매립 하려는 경우</li> <li>2) 관리선박이 주로 통항하는 수역에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또는 매립하려는 경우</li> </ol>

<p>3.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p>	<p>가.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이 동의 또는 조건부동의(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로 한함)로 종료된 안전진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항만 또는 부두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 다만,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적용된 최대 통항선박의 규모 또는 최대 통항량이 증대되거나, 부두 또는 항로등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항만 시설의 배치에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li> <li>2) 「항만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li> <li>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li> </ol> <p>나. 영 별표 2의2 제4호마목의 대상사업 중 관리선박이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부두 수역의 방파제·파제제를 건설하려는 경우</p>
<p>4. 그 밖의 사업</p>	<p>가. 이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중 인근에 항로, 항만시설, 저수심구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이 대상 사업을 실시하여도 기존의 해상교통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p> <p>나. 대상사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군항의 보호구역 등 일반(민간) 선박이 통항할 수 없는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 경우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p>

※ 비교: 위 표에서 “관리선박”이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이루어질 수역을 통항하거나 통항이 예상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통항이 예상되는 경우”란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항만재개발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등에 따라 통항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한다.